

---

# 통일교육 기본계획(2022~2024) 및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 3.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목 차

<b>I.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b> .....	<b>1</b>
1. 수립 배경 .....	1
2. 추진 경과 .....	2
<b>II. 현황</b> .....	<b>3</b>
1. 2021년 통일교육 현황 .....	3
2. 2021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	8
3. 기존 통일교육 성과 및 보완점 .....	11
<b>III. 목표 및 추진방향</b> .....	<b>13</b>
1. 통일교육 목표 .....	14
2. 통일교육 추진방향 .....	17
3. 통일교육 협력망 구축 .....	19
4. 통일교육 정책과제 목록 .....	20
<b>IV. 정책과제</b> .....	<b>22</b>
1.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	22
2. 사회 통일교육 확대 .....	28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33
4. 통일교육 국민의식 제고 .....	38
5. 통일교육 인프라 마련 .....	41
6.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	48
7. 통일교육 체험공간 .....	51
8. 글로벌 통일교육 .....	53
<b>V. 협조·요청사항</b> .....	<b>57</b>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	57
2. 통일교육주간 참여 .....	59
3.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강화 .....	60
<b>VI. 부록</b> .....	<b>61</b>
1. 2021년 통일교육 통계 .....	61
2. 2022년 통일교육 예산 .....	62
3. 통일교육 법령 .....	63

# I.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1 수립 배경

-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의 제정(‘99.2월)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본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법 제6조)

###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 2항(통일교육기본계획 포함 사항) >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계획을 포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일교육 계획을 제시
  - 법은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법 제6조 제3항)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의 협조 요청을 규정(시행령 제3조의2)

## 2

## 추진 경과

- 통일부는 법에 따라 2000년도부터 연 단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배포하여 통일교육의 계획을 공유
    - ※ 미발간 연도 : '02년, '04년, '07년, '15년
  
- 2019년부터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 세부계획은 연 단위 통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반영
  - ※ 2022년은 3개년 기본계획과 2022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 「통일교육 기본계획(2022~2024) 및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 경과
  - '21.12.28. (통일부 → 관계기관) 작성 지침 통보 및 작성 요청
  - '22. 2. 7. (관계기관 → 통일부) 각 기관 계획 제출
  - '22. 2.28.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 '22. 3.16. (통일부 → 관계기관) 기본계획 통보

## II. 현황

### 1 2021년 통일교육 현황(통일부)

#### ① 사회통합형 통일교육 추진

- 사회통합 주제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콘텐츠 등 개발·운영
  - (교육과정) △열린 시민과정 △사회통합 분야 전문과목 3과목\* 장·단기 교육과정에 편성 △지역통일교육센터 사회통합형 통일교육 강좌 운영 등
  - \* 과목: △남남갈등 극복과 사회통합 △남북 주민간 마음의 통합 △독일사례를 통해 본 사회통합 교육의 과제
  - (콘텐츠) 사회통합 주제 △유튜브 영상 2종(사피엔스 스튜디오 & 354삼오사) △청소년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사회통합형 평화통일교육 단행본(인디고서원 협업) △통일 그림동화 △사회적 대화기법 활용 중등용 통일교육 교재(서울시교육청 협업) △사회심리학을 접목한 사회통합(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사회통합형 통일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 (연구용역)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체계-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평화·통일교육 발전방안'
  - (학술회의)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내용체계 연구' 심포지엄 개최(11.4)
- 사회통합을 주제로 참여 체험 프로그램 및 공모전 등 개최
  - △제9회 통일교육주간(5.24~5.30)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5~7월)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토크콘서트(10.30) △사회통합 주제 포스터공모전(3.11~4.30)

#### ② 분야별 통일교육 지원

##### □ 학교 통일교육

- 유관기관 협력 및 체험형 활동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기반 확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 \* 학교통일교육 정책협의회(2회), 학교통일교육 지원협의회(2회)

-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개최 및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 지원을 통해 학교통일교육 모델 개발과 확산 노력
  - \*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76편 출품(14편 입상),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 36개교 지원 및 담당교사 화상회의(2회) 개최
-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 운영 지원, 통일교육 우수사례 확산
  - \* 경남, 광주, 경기, 대구,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참석
- (참여형 체험활동) 코로나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학교 통일체험교육 : 당일(142개교), 1박2일(18개교) 운영
  -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 온라인(575회) · 오프라인(701회) 강의
  - 통일 리더캠프 : 초중고 온라인 실시간, 대학 온·오프라인 병행, 재외한국학교 특별캠프 등 총126회 실시
  -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 온라인 발대식 개최, 온라인 여름캠프, 현장견학
-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여('14년~), 학생들의 통일인식 조사 및 학교통일교육 상황 진단
  - 교육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문항 개선 △온라인 웹조사 진행
- 온라인 강좌 실시 등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응 및 대학 통일교육 협력체계 강화
  - (통일교육 선도대학) 9개 선도대학을 통해 대학생 통일인식 제고 및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
    - 선도대학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모델 개발 △강좌 운영 △우수 교육모델 확산
    - 선도대학 모델 공유·확산 및 협력대학 등과의 협업 강화
    - 온라인 통일교육 주간 계기 선도대학별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 △통일교육주간 관련 동영상 제작 △평화통일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평화통일 포럼, 에세이 공모전, 표어 공모전, 평화통일 기행 △통일UCC 경진대회

- (통일교육 협력대학) 7개 협력대학 운영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기회 확대
- (통일교육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확대 및 대학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추진으로 대학생에게 다양한 통일교육 기회 제공
- \* △1학기(31개교) : 특강 12개교, 강좌 19개교 △ 2학기(24개교) : 특강 10개교, 강좌 14개교
- (대학 연합 학술회의) 통일교육에 참여 중인 대학들이 교육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공유, 대학 통일교육의 방향 제시 및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 사회 통일교육

### ○ 민간부문·공공부문 등 범사회적 통일 공감대 확산

- (7개 권역 지역 통일교육센터) 권역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사업 시행으로 지역 통일교육의 허브 역할 수행
- 사회통합형 통일교육 사업 개발,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사업 적극 발굴 등
- (통일교육 위원) 연찬반, 명사특강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핵심인력으로 육성
- 지역사회 통일교육 공간 확대(순회강좌, 통일관 해설사 등), 해외 협의회 자체 통일 공감 행사 지원 등 국내외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 지역 순회강좌를 통해 통일교육위원 활동 공간 적극 확대
-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통일교육협의회 및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 사업 지원
- 통일공감 평화통일 축제, 대학생 기자단 통일기사 경진대회 등 추진
-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주요 부문별 사회단체와의 MOU를 통해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교육 저변 확대
- \* △평화통일 국제웨비나 △평생교육웹진 인터뷰 △성모수도회 평화통일교육 실시 등

- (공공부문 통일교육)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로 공직사회 내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의식 제고
  -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19년 대비 '20년 교육실적이 상당부분 개선
    - \* ('20년) 2,350개 기관 약 89만 명 참여, 교육참여율 '19년 63.5% → '20년 80.3%(17%↑)
-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흥미·참여·소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
  - 제2기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 (5~7월)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토크 콘서트」 개최(10.30)
    - \* P-UZY(피우지) : 평화(Peace)·통일(Unification), Z세대와 Y세대가 피우다!
- (지역 통일관) 통일관 리모델링, 전시 콘텐츠 및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통일 전시·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 (오두산 통일전망대) △기획전시전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전시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의 통일문화 체험 공간으로 역할
  - \* 기획전시 : △Happy Together △20인의 예술가가 전하는 한반도 평화이야기(전방) △이산가족 北 고향 사진전(꿈엔들 잊힐리아)

### ③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 새로운 시도와 소재·채널 다변화, 새로운 독자층 발굴·확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골라볼 수 있는 환경 구축
  - (사이버·뉴미디어) △콘텐츠 소재 다변화(영화, 미술, 랜선여행, 역사, 문화유산 등) △국민참여형 콘텐츠 시스템 구축(내가 만드는 평화통일 콘텐츠, 스마트러닝 서포터즈)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개발(짤막시리즈, 페이스북, 카드뉴스 등) 등
    - \* 교육원 사이버 콘텐츠 활용 기관 확대 ('19년 48개 기관 → '21년 120개 기관)
  - (영상) TV 프로그램\*·애니메이션\*\* 협업에 이어 유튜브 채널과 콜라보 본격화(1종→7종 확대\*\*\*)로 세분화된 시청층을 효과적으로 공략
    - \* △KBS1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강원도 철원편」(6월)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 6회」(7월) △MBC every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11월)



- \*\* △「신비아파트 크리스마스 특집편」 유튜브 조회수 224만회(좋아요 1.7만, 댓글 2천여개)  
△「브레드 이발소 시즌 3 본편」△「반지의 비밀일기」 특집편 제작(12~1월 방영 예정)
- \*\*\* △「SBS 모비딕 연애블랙리스트」(5월) △「지켜추」(5월) △「사피엔스 스튜디오」(5~6월) △장성규니버스(6월) △「고양만두」(7월) △「354 삼오사」(7월)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7~8월)
- **(기본교재)** △2021 기본교재 발간(『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한반도 평화 이해』 3종), △각급 학교, 단체·연구기관, 개별 신청자 대상 배포(각 28,500부) △다수의 대학에서 수업교재로 활용(‘21년 7월말 기준, 30여개 대학에서 수업교재로 신청)
- **(도서)** △다양한 소재(대중문화, 북한여행, 영화, 생태, 사회통합, 유럽 경제통합 등) △저명 저자 섭외(문정인, 최재천, 고재열, 강성률 등) △전문 출판사 협업(메디치 미디어, 열린책들, 주니어 김영사), 다양한 참고도서\* 발간(12월)
- \* △인문 대중서 시리즈 『손안의 통일』 (금년도 5종 신규발간, 총 15종, 시중서점 판매) △북한지식사전 △명사특강 시리즈 △청소년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Doing Hope: 공감과 연대의 사회를 위하여』 (인디고서원 협업) △사회적 대화 활용 중등용 교재(서울시교육청 협업) △통일그림동화 평화활동북 △『스크린에서 만난 분단과 갈등, 그리고 평화』
- **(교육자료 외연 확대)** 교육 자료가 반드시 책자·영상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 수요자 선택의 폭 확대
- \* △평화 다이어리 △굿즈캐릭터 인형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 △오디오북 △초·중·고·대학 수업용 PPT강의안(11종) △학교 수업용 클립영상(45편) 및 교수학습자료(수업지도안, 활동지 세트 18편) 등
- **(사각지대 보완)**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기회가 적은 유아·장애인 등 대상 자료 개발로 통일교육의 사각지대 보완,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
- \* [장애인] △통일그림동화 오디오북·점자책(시각장애인용) △「소곤소곤 통일이야기」(청각장애인용) △유튜브 콜라보 콘텐츠 20편(한글자막, 청각장애인 활용 가능) △재외동포·시청각 장애인용 영상 4종 제작중(금년도 신규 제작 영상을 영문·한글자막, 수화 등을 입혀 변환)
- \* [유아] △「신비아파트」 미니 애니북 △애니메이션 4종(「브레드이발소 시즌 3」 ‘초콜릿장벽편’ & 「디저트 이야기-냉면편」 & 「반지의 비밀일기 특집편-고양이와 수상한 사춘」 & 「사라진 마법의 구슬」) △2021 통일그림동화 「그래, 달라도 괜찮아」 등

## 2

## 2021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통일부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협조 하에서 매년 초·중·고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

\*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4항\*\*에 근거, 2014년부터 시행

\*\*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④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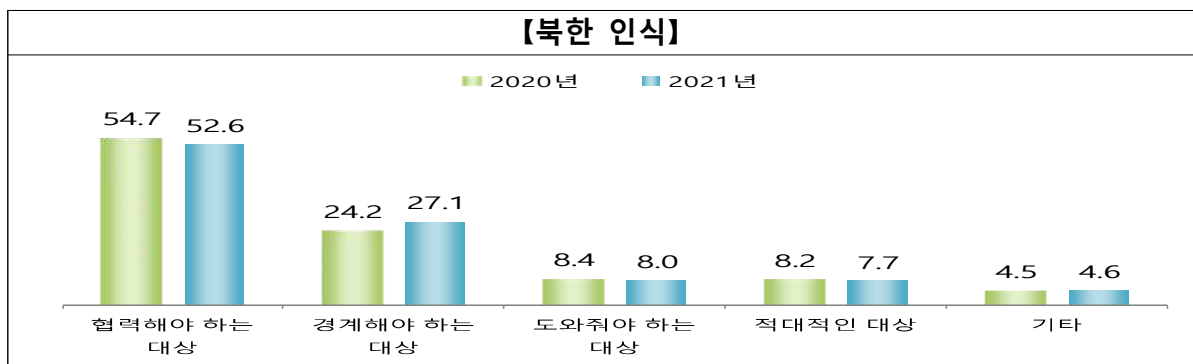
####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초·중·고 734개교, 총 72,524명
  - 학생(67,000명) : 초(5·6학년) 22,000명, 중 22,000명, 고 23,000명(95% 신뢰수준,  $\pm 0.38\%$ p)
  - 교사(4,437명) 및 관리자(1,087명) : 초등 담임, 중등 사회도덕역사 교사 등(95% 신뢰수준,  $\pm 1.46\%$ p)
- \* 지역, 학교급에 따른 학교 수 비례층화 표본추출
- (조사기간) 2021.11.1.~ 12.10.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 (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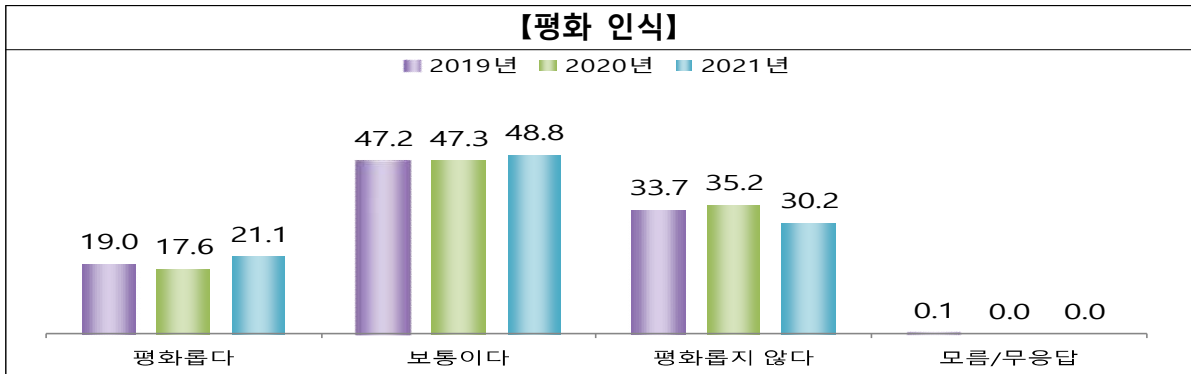
### 2] 조사 결과

#### 【북한 및 평화·통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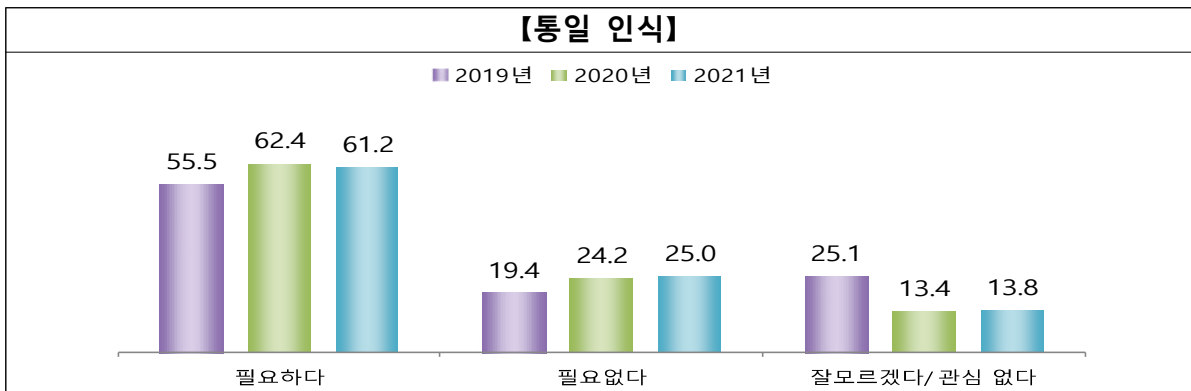
- 북한에 대해 학생들의 52.6%가 '협력 대상', 27.1%가 '경계 대상'이라고 대답
  - 학생 다수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에 비해 북한이 '경계 대상'이라는 인식이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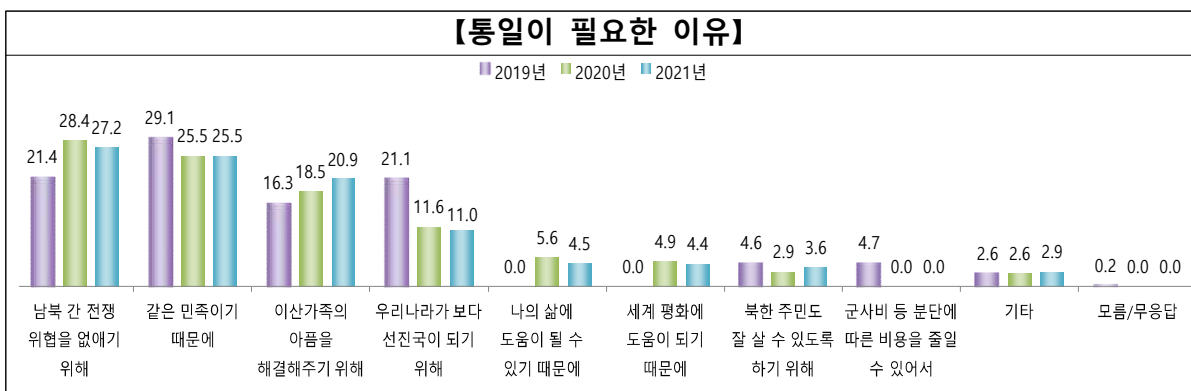
- 학생들은 남북관계가 평화로운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48.8%), '평화롭지 않다'(30.2%), '평화롭다'(21.1%) 순으로 대답
- 2020년 조사에 비해 '평화롭다'는 인식이 증가



- 통일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61.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25.0%) 순으로 대답
- 학생 다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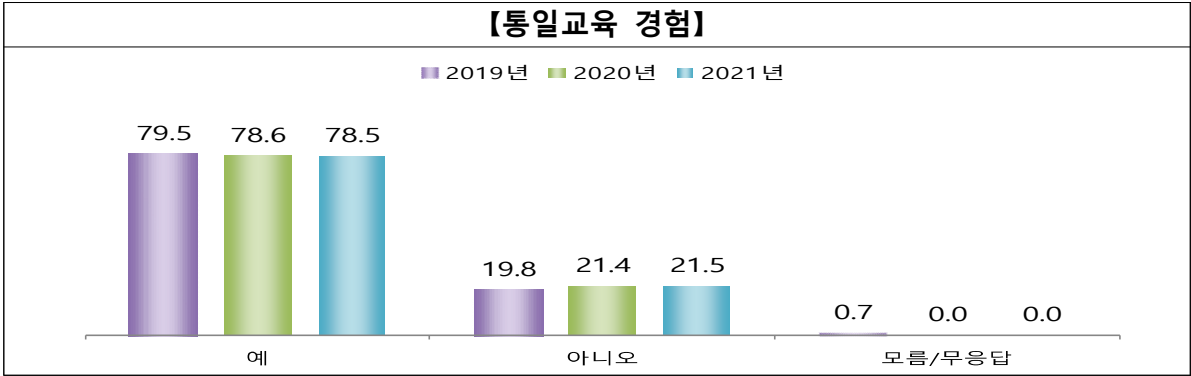


-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쟁위협 해소'(27.2%), '같은 민족이므로'(25.5%), '이산가족 아픔 해결'(20.9%) 순으로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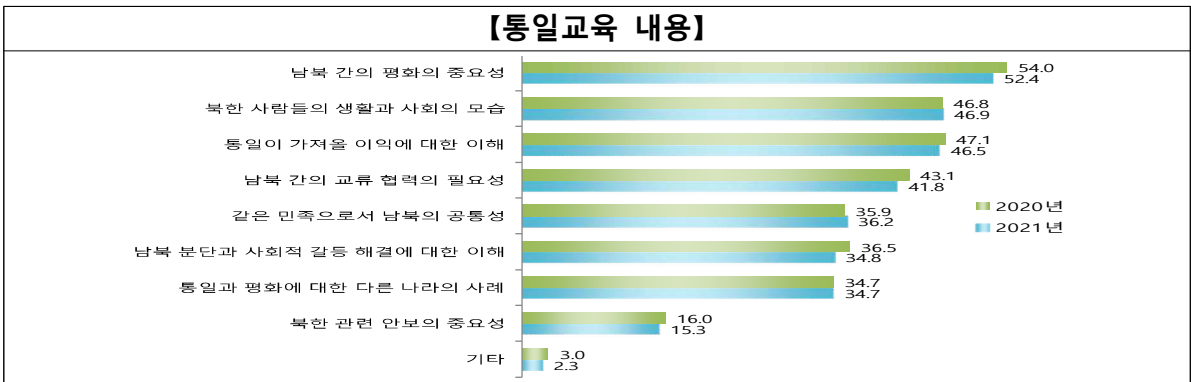


## 【통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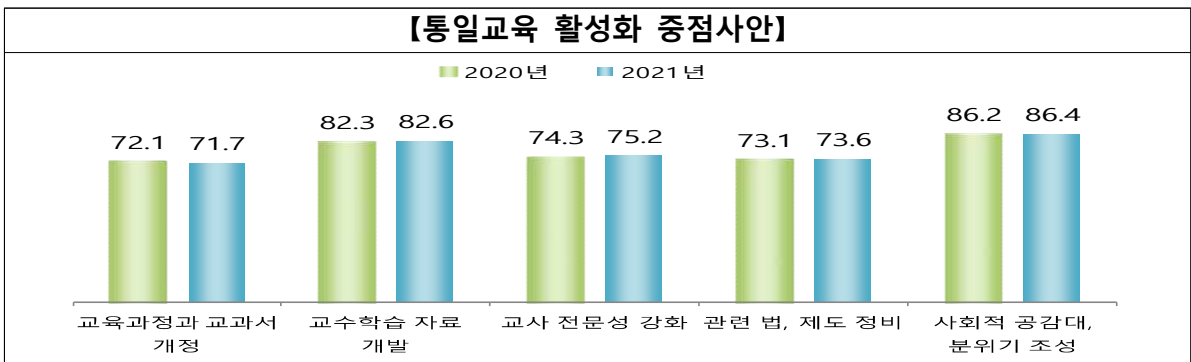
- 학생들의 78.5%가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크게 위축됨 없이 꾸준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통일교육의 내용(복수응답)으로 '남북 간 평화의 중요성'(52.4%),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46.9%), '통일이 가져올 이익'(46.5%), '남북 간 교류의 필요성'(41.8%) 순으로 대답



- 교사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복수응답)으로 '사회적 공감대·분위기 조성'(86.4%), '교수학습 자료 개발'(82.6%), '교사 전문성 강화'(75.2%), '관련 법·제도 정비'(73.6%) 순으로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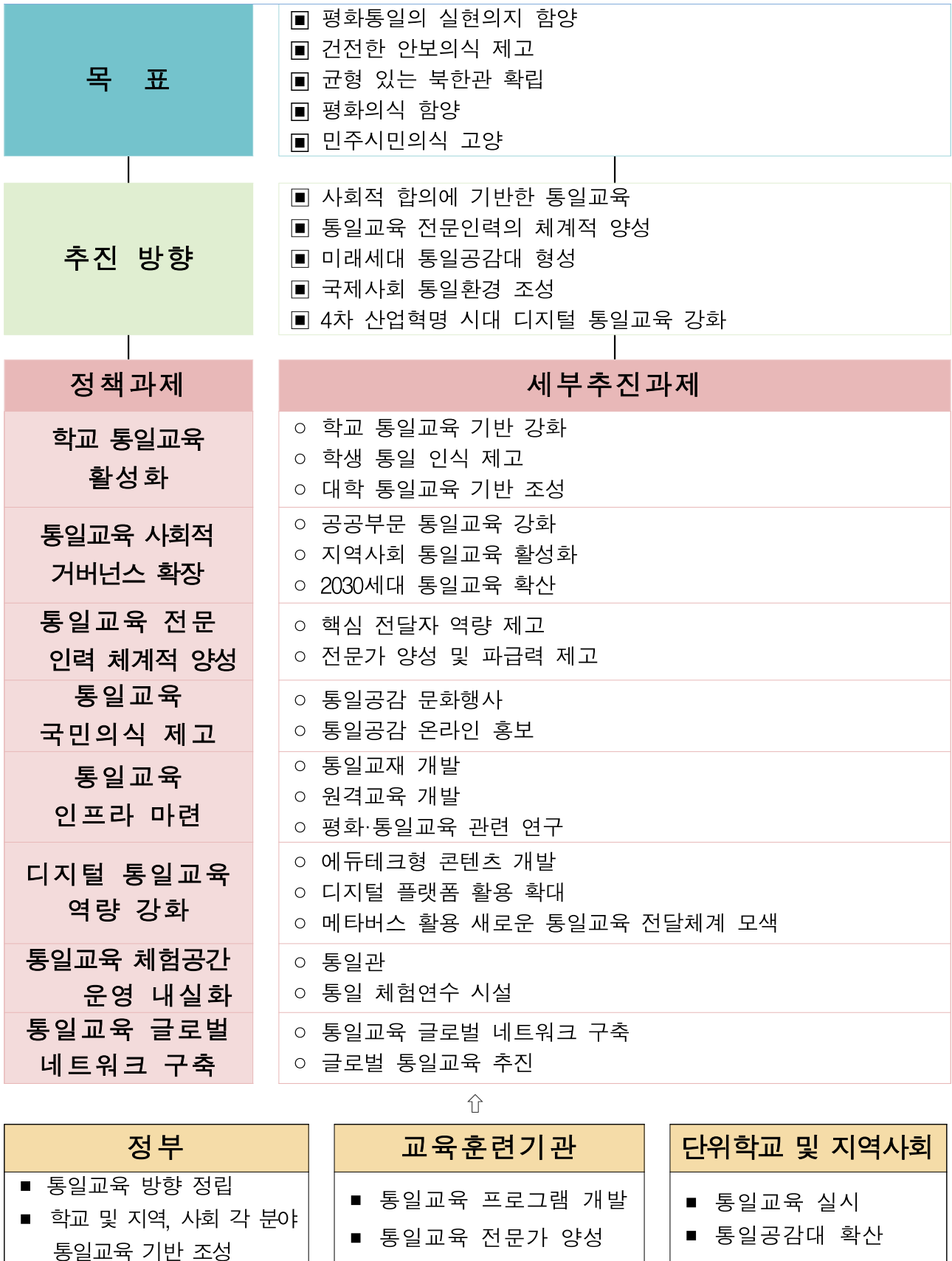
## □ 성과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확대
  - 통일교육 실시 인원 연 101만명 달성
  - \* 누적(483만명), '17년(17만명)→'18년(56만명)→'19년(72만명)→'20년(84만명)
- 통일교육 정착 및 사회통합형 통일교육으로 외연 확장
  - 사회통합형 통일교육 체계 정립, 교육과정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 △(연구용역)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체계·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평화·통일교육 발전방안 △(교육과정 개설) 열린 시민과정, 남남갈등 극복과 사회통합, 남북 주민간 마음의 통합, 독일사례를 통해 본 사회통합 교육의 과제
- 2030세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 참여체험 프로그램 확대
  - (교육과정)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개설(연간 3학기 36강)
  - (콘텐츠) △손안의 통일 시리즈(5권) △사피엔스 스튜디오 등
  - (참여·체험프로그램) △2030 피우지(P-UZY) 아카데미&토크콘서트  
△통일리더캠프(비대면)
- 팬데믹 시대 뉴노멀인 '온라인 교육' 성공적 안착
  - 사이버 통일교육 약진('19년 22만명→'20년 44만명→'21년 45만명)
  - 제9회 통일교육주간(온오프라인) 누적 99만명 참여·조회 511만회
- 학교통일교육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1,143개교) △통일리더캠프(125회) △학교 통일 체험교육(161개교) △통일교육 연구학교(36개교) 지원 등

## □ 보완사항

-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한 대응 필요
  -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탄력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운영체계 및 교육 콘텐츠 지속 개선
- 통일교육 주요 관계자에 한정된 공감대 형성,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일공감대 확산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장 필요
- 종교·사회 이외에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으로 통일교육 협업 분야 확대 노력

### III. 목표 및 추진방향



# 1

## 통일교육 목표

### ① 통일교육 개념

-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등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 ※ 「교육기본법」도 학생 및 교원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과 연수를 규정(제17조의6)

### ② 통일교육 목표(『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인용)

-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임을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 군사적 위협과 여러 위험요소들로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지켜나가는 안보의식 강화
-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북한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배양
- 평화의식 함양
  -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관용의 정신, 평화의식 제고
- 민주시민의식 고양
  - 자유·민주·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국가 구상을 위해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통합적으로 교육



③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15개항(『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인용)

- 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 통일은 분단의 극복이자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
- ②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 전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차원의 문제
- ③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 병행 필요
- ④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 통일의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 필요
- ⑤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강한 안보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토대
- ⑥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 북한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토대 마련 필요
- ⑦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 북한과 관련된 사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북한 체제·사회 제반 현상의 본질적 요인에 대한 판단이 중요

- ⑧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연결고리를 활용하여 민족 동질성을 키워나가는 실천적 자세를 가질 필요
- ⑨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 남북은 민족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 ⑩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화해협력, 신뢰 증진 등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할 필요
- ⑪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남북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필요
- ⑫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복지 등 자유민주적 가치가 보장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열린 사회를 추구하는 통일 국가 지향
- ⑬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의 선순환은 아시아와 세계에도 기여
- ⑭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화해협력 → 상호 신뢰 →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 정치적 통합 등 단계적 접근 중요
- ⑮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과정에서 여러 시각의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토론에 기초하여 다양한 견해를 존중

## 2

## 통일교육 추진방향

### 1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 사회적 합의 확대 및 구체화·현실화시켜 교육 현장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일교육 적극 실현
  - △교육 대상 다변화 △교육과정별 모듈화(연령, 이해도·관심도 등에 따라 강의안 및 참여 수업 반영) 등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 「통일교육주간」 10주년(22.5.23~5.29)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추진
  - △지역주민 초청 △지역통일관 및 통일교육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주자 참여 확대
  - △이벤트·챌린지 △소규모 토론 프로그램 △전문가 학술회의 등 대상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제공

###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1년, 3학기 과정, 50명) 본격화
  - \* △1학기 총론 수업 △2·3학기 수준별 분반을 통한 참여·토론형 수업
- 신규 교육대상 발굴 및 확대
  - △업무협약 체결기관 △비대면교육 가능 신규단체 발굴 △교육원 인근 문화유산 및 유관기관 활용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

### 3 미래세대 통일공감대 형성

- 2030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2030세대 동호회 대상 통일문화 활동 지원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 등 쌍방향 소통·토론식 프로그램 확대·강화 등
  - △청년영화제 △청년작가 초대전 △교육원 시설 청년문화 공간 제공 등 청년 문화사업 본격 추진

(2030세대 통일교육 추진 현황) ①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②사이버교육 '2030세대 과정' ③통일교육 선도대학 ④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 ⑤P-UZY 아카데미 및 토크콘서트 ⑥유튜브 협업 ⑦2030세대 대상 도서콘텐츠 개발 등

#### 4] 국제사회 통일환경 조성

-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 (해외 신진학자) 기존의 정치·외교 분야 외에도 역사, 철학, 법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해외 신진학자들이 참여, 한반도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하는 플랫폼 제공
  - (해외 전문가·교수 초빙) 2030세대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국제적인 시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강 진행
- 해외신진학자 1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및 평화·통일 학술회의 개최

#### 5]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통일교육 강화

- 포스트코로나시대 다양한 미디어 연계·활용, 국민 소통과 관심 제고
  - 지상파·종편·언론사 등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쌍방향 뉴미디어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소통 확대
  - 뉴미디어에 특화된 이모티콘, 각종 굿즈(Goods), 숏폼(Short Form) 등 캐릭터 활용형·참여형콘텐츠 등을 개발, 통일교육 관심 제고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감·체험형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강화
  - 평화지도, DMZ 생태공원, 북한 시장 등 다양한 통일 아이디어를 AR·VR·AI·메타버스 등 4차 산업기술과 융합 콘텐츠로 제작
  - 빅데이터 활용한 AI챗봇 상담 확대 등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디지털 교육플랫폼으로 전환

### 3

## 통일교육 협력망 구축

○ 범정부 차원의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방향 및 정책 수립, 교육부는 학교 통일교육 추진 정책 수립

※ 긴밀한 협력·협업을 위해 통일부-교육부 간 ‘학교통일교육정책정협의회’(국장급), ‘학교통일교육지원협의회’(과장급) 상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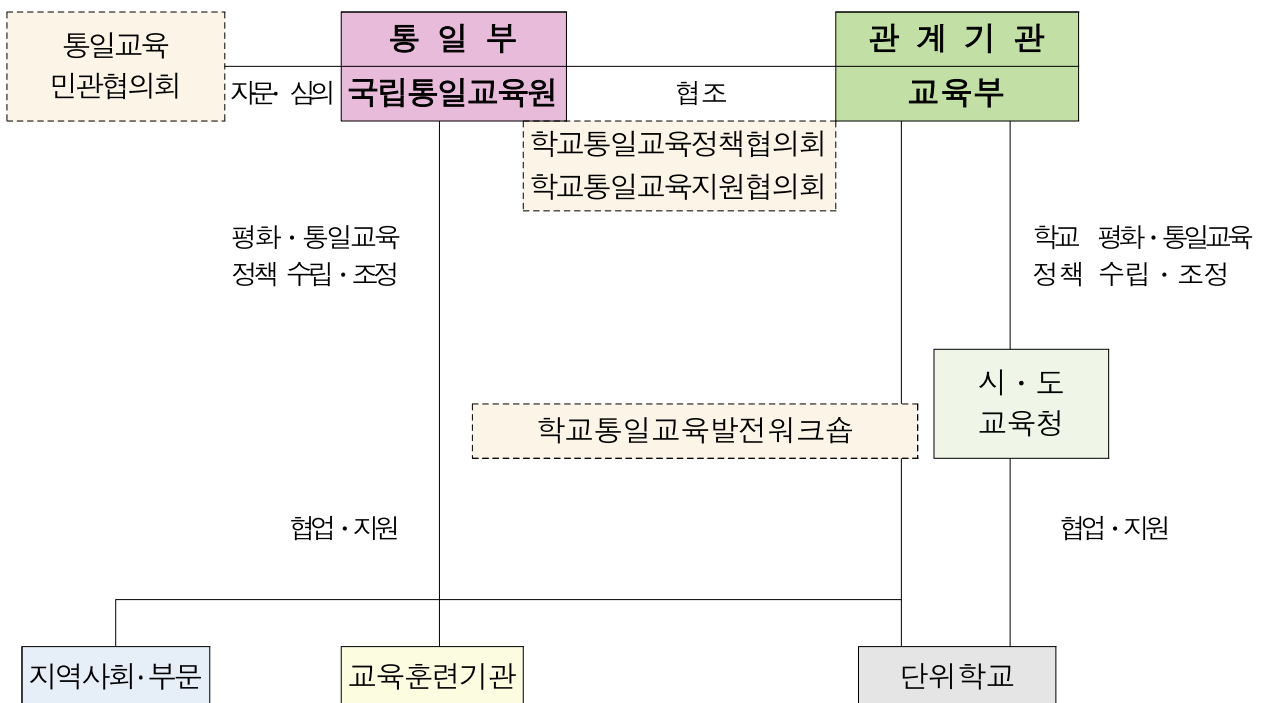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교육청, 각급 학교의 유기적인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조정·협업

○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형성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전문가, 시민단체 등 평화·통일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

※ 「통일교육 민관협의회」(통일부차관-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공동위원장)  
: 통일교육 방향·내용·제도 등에 대한 협의·자문을 위해 전문가·시민단체·교육계·국회·유관부처 등 총 26명으로 구성

### < 통일교육 협력망 >



## 4

## 통일교육 정책과제 목록

○ 8개 정책과제 - 34개 세부추진과제

정 책 과 제	소관
<b>1.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b>	
<b>1-1. 학교 통일교육 기반 강화</b>	
1. 학교 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2.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부·교육청
<b>1-2. 학생 통일 인식 제고</b>	
1. 학생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2. 학생 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교육부·교육청
<b>1-3. 대학 통일교육 기반 조성</b>	
1. 대학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2. 대학 통일교육 저변 확대 및 통일 논의 활성화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b>2. 통일교육 사회적 거버넌스 확장</b>	
<b>2-1. 공공부문 통일교육</b>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교육원(교육총괄과)
2. 분야별 맞춤형 통일역량 강화	교육훈련기관
<b>2-2. 지역사회 통일교육</b>	
1. 지역사회 통일교육 기반 구축	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2. 지역사회 통일교육 추진	지방자치단체
<b>2-3. 2030세대 통일교육</b>	
1. 2030세대 통일공감대 확산	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b>3. 통일교육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b>	
<b>3-1.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b>	
1. 교원 연수 강화 등 학생 통일인식 제고 지원	교육원(연수과) 교육부·교육청
2.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교육원(연수과)
<b>3-2.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b>	
1. 전문가 양성	교육원(연수과)
2. 사회지도층을 통한 파급력 제고	교육원(연수과)

정 책 과 제		소관
<b>4. 통일교육 국민의식 제고</b>		
<b>4-1. 통일공감 문화행사</b>		
1. 통일교육주간		교육원(교육총괄과)
2. 지역별 통일공감대 행사		지방자치단체
<b>4-2. 통일공감 온라인 홍보</b>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교육원(연구개발과)
<b>5. 통일교육 인프라 마련</b>		
<b>5-1. 통일교재 개발</b>		
1. 도서자료		교육원(연구개발과)
2. 영상자료		교육원(연구개발과)
3. 강의안 등 기타자료		교육원(연구개발과)
4. 교수·학습 콘텐츠		교육부·교육청, 지방자치단체
<b>5-2. 원격교육 개발</b>		
1. 사이버강의를 통한 학습		교육원(연구개발과)
<b>5-3.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b>		
1.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등 연구·조사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2. 평화·통일교육 학술 연구 지원		교육원(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b>6.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b>		
<b>6-1. 에듀테크형 콘텐츠 개발</b>		교육원(연구개발과)
<b>6-2. 디지털 플랫폼 활용 확대</b>		교육원(스마트교육팀, 교육총괄과)
<b>6-3. 메타버스 활용 새로운 통일교육 전달체계 모색</b>		교육원(스마트교육팀)
<b>7. 통일교육 체험공간 운영 내실화</b>		
<b>7-1. 통일관</b>		
1. 오두산 통일전망대		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2. 지역 통일관		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b>7-2. 통일 체험연수 시설</b>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b>8. 글로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b>		
<b>8-1. 통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b>		
1. 해외 전문가 초청		교육원(교육총괄과)
<b>8-2. 글로벌 통일교육 추진</b>		
1. 해외 신진학자 대상 통일교육		교육원(교육총괄과)
2.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통일교육		교육원(교육총괄과)

## IV. 추진 과제

### 1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 학생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참여·체험형 교육 확대 등 학교 통일교육 기반 강화 및 통일교육 추진

\* 법 규정 사항 : 학교 통일교육 진흥(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

#### 1-1 학교 통일교육 기반 강화

##### 1-1-① 학교 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 □ 2021년 추진 실적

###### ○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정책협의회\*(2회) 및 지원협의회\*\*(2회)를 개최하여, 통일교육주간 협조, 국민통일협약(안) 활용방안,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등 논의

\* 학교평화통일교육정책협의회 : 통일부·교육부·세종시교육청·국가교육회의·통일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8개 기관 협력

\*\* 학교평화통일교육지원협의회 : 통일부·교육부·시도교육청 등 3개 기관 협력

- 발전워크숍\*(5회)을 개최하여 시·도 단위 현장 학교통일교육 발전방안 소통·협의

\*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 시·도 장학사, 통일담당교사, 관심교사 등 참여

######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일교육 실시 및 공동사업 추진

\* 통일부-교육부 공동사업 :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교육주간,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 통일부-교육청 협업사업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

- 통일교육 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등

###### 【2022년 시행계획】

###### ○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연구학교 운영,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지원, 참고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 관련 협업 강화



## 1-1-②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부

### □ 2021년 추진 실적

#### ○ 교육과정 기반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학교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통일교육 주간(5월 넷째 주)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통일주간 운영 사례 (전남) 비대면 사진전, 북한음식 체험의 날, 통일 에코백/국기 만들기 등, (충남) 통일의 날 민속놀이 체험, 평화통일 컬러링북 만들기, 그림책으로 여는 평화통일교육 등

#### ○ 학교 평화·통일교육 추진 체제 구축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주제로 '생태·환경, 미디어 리터러시, 세계시민 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부 교육청) '생태·환경, 미디어 리터러시, 세계시민 역사에 대해 주제별·종합 포럼(5회) 실시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 시민적 가치(존중, 자율, 연대)에 기반을 둔 학교 통일교육 추진

- 사회적 갈등, 환경 등 세계 공동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적 가치에 기반을 둔 학생의 평화 감수성 및 역량 신장 지원

#### 【2022년 시행계획】

#### ○ 학교 통일교육 역량 강화

- 범교과 주제로서 다양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학생 참여 중심으로 실시
- 통일교육 주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민주시민교육과 연계 강화

- 환경, (노동)인권, 미디어 리터러시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학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교육과 연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도 특색사업 지원

## 1-2 학생 통일 인식 제고

### 1-2-① 학생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 □ 2021년 추진 실적

- 학교 통일교육 모델의 개발 및 확산 노력
  - 학교통일교육 지역 거점으로서 '학교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 지원(36개교)
  - 학교현장 지도사례 발표 경연대회인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개최(74편)
  - 전문 강사가 개별 학교를 방문, 표준강의안과 놀이형 교구재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실시(1,148개교)
- 온·오프라인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초·중·고교 대상 '학교통일 체험교육' 운영 경비 지원(160개교)
  -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 대상 '통일리더캠프' 운영(온라인 110회, 오프라인 16회)
  - 전국 초등 5~6학년 대상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선발·운영(200명)
  - '청소년 평화·통일문화 경연대회'(창작 통일노랫말, 창작 통일동요, 평화 웹툰 등 3개 부분) 개최
-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 다양한 교내체험 프로그램 모델 제공 및 학생 눈높이에 맞는 AR·VR 콘텐츠 제작
  - 지역별 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평화·통일 현장 체험지 안내영상' 15편 제작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통일교육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확산 노력
- 현장체험교육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기존 접경지 위주에서 평화·통일·역사 관련 지역 현장체험지로 다양화

##### 【2022년 시행계획】

- 초·중·고 체험교육 지원 확대 및 대학생 체험교육 신설
- 기존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비인가 대안학교, 취약계층 대상 교육 운영
- '중학생 기자단', '50초 영화제' 등 청소년 직접 참여 프로그램 확대

## 1-2-② 학생 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교육부

### □ 2021년 추진 실적

#### ○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지원

- 학생들이 주도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토론, 문화 예술 등을 통해 평화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동아리 운영(1,077교) / (경기) 학생으로부터 시작하는 평화·통일교육 주간 운영(경기 시흥 배곧고 통일동아리-자치회 주관)

- 교육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체험 캠프, 사제 동행 프로그램, 평화·통일 한마당 등 운영

※ (세종) 학생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 평화·통일 공감 한마당 운영, (경남도내 지역 주민 대상 평화·통일 콘서트, 평화·통일 전문가 특강, 평화·통일 공감 토크콘서트, 평화·통일교육 나눔 한마당 운영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 학생의 주도성 및 시민·평화 역량 신장 지원

-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 및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의 시민역량 및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원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지원

#### 【2022년 시행계획】

####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의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및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시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축제, 토론, 캠프 등 교육청별 학생 주도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등에서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토크콘서트, 평화·통일교육 한마당 등 운영

## 1-3 대학 통일교육 기반 조성

### 1-3-① 대학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 □ 2021년 추진 실적

-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역별·기능별 통일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발전
  - 3개 선도대학('19년 지정) 2년차 사업 종료에 따른 중간평가 실시(2월)
  - 선도대학 실적 관리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4월, 11월)
  -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성과발표회 개최(12월)
- 선도대학 모델 공유·확산, 협력대학과 협업 등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 \*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통일·북한 전공·교과 139개 과정 및 비교과 133개 과정 운영, 28개 대학에 통일교육 모델·프로그램 공유·확산, 총 21,512명 참여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선도대학 사업 내실화 및 확대를 통해 대학생 통일인식 제고
  - 전공 개설, 정규교과 확대, 교과목·교재 개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통일교육 우수 모델 제도화 및 성과 확산
  - 선도대학 재진입 확대, 대학원 지원 신설 등 선도대학 사업 규모·범위 확대 추진

##### 【2022년 시행계획】

- 선도대학 중간평가 실시 및 수도권 신규 선도대학 선정(1~2월)
  - \* 평가대상 : '20년에 지정된 5개 대학(경기대·대진대·서울교대·충북대·전북대)
- 선도대학 모니터링·컨설팅 실시(9월) 및 연합 성과발표회 개최(12월)
- 신규 선도대학 사업 안정화 지원, 3~4년차 사업 추진 대학의 성과 제도화 및 우수 통일교육 모델 공유·확산

## 1-3-② 대학 통일교육 저변 확대 및 통일 논의 활성화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 □ 2021년 추진 실적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추진
  - 대학생 대상 통일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총 40개 대학의 55개 통일·북한 관련 특강(22건) 및 정규 강좌(33건) 개설 지원
  - 비대면 교수 방법 적극 활용, 강의내용 다양화 등 대학 통일교육 관심도 및 만족도 제고 노력
    - \* 선도대학과 연합학술회의 개최, 대학 통일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 '통일논문 및 홍보영상 공모' 실시(58명 참여)
  -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관심 및 연구 분위기 조성, 자율적 참여 활동 지원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내실화 추진
  - 대학 선정 시 지역·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학 통일교육 기회 확대
  - 사업(강의, 현장체험) 방식은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을 탄력적 적용
-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통일·북한 문제 논의 및 연구 지원 활성화

#### 【2022년 시행계획】

- 대학생 통일 특강·강좌 사업과 선도대학 사업을 연계, 사업간 시너지 제고
  - 통일·특강 강좌사업 공모 시, 선도대학 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대학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연계
- 전국 단위 '통일 논문 및 홍보영상 공모' 추진 시, 대학생 참여 확대 노력
  - 효과적인 홍보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여 제고

## 2

## 통일교육 사회적 거버넌스 확장

-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
- 공공부문, 2030세대 통일교육 등 분야별 통일교육 활성화 유도
- 사회통일교육 다변화 및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 2-1 공공부문 통일교육 강화

#### 2-1-①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 □ 2021년 추진 실적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18.9월)으로 '19년부터 공공부문 통일교육 본격 실시
    - 교육 실적 제출율 : '19년 65% → '20년 90%(25% 증가)
    - 교육 참여 인원 : '19년 67만명 → '20년 89만명(33% 증가)
- ※ '21년 교육실적은 '22. 3월에 집계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공공부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 통일교육 체계적 지원
  -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이버교육(54개 과정), 교육교재(표준 강의안·영상 콘텐츠), 추천 강사풀 명단(106명) 등 제공
  - 교육실시 어려움이 있는 기관 대상 '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 실시

##### 【2022년 시행계획】

- 공공부문 통일교육 안정적 지원 및 지자체 통일역량 강화
  - △'21년도 통일교육 결과 분석 및 평가 △사이버 교육과정, 추천 강사풀 등 교육지원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확대실시
  - 지자체 합동평가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지표 선정에 따른 지자체 지원 및 실적이행 점검

## 2-1-② 분야별 맞춤형 통일역량 강화 (교육훈련기관)

### □ 2021년 추진 실적

- 분야별 교육훈련기관에서 통일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별 과정 운영 및 신규자, 승진자, 중견리더 등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반영
  - 전문가 초빙 강의, 현장 체험 중심 통일교육 실시
- 교원연수원에서 특별과정 운영 및 직무연수, 자격연수, 맞춤형 현장 견학 등에 교과목 편성을 통해 통일교육 반영
  - 학교 관리자, 탈북학생 지원 교사,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직, 교육부 신규자 등 대상 통일교육 실시, 교감, 정교사 등 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통일역량 강화 수업 포함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질 향상
- 국립통일교육원과 각 교육훈련기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도모

#### 【2022년 시행계획】

- 장기 연수과정에 통일 관련 교과목 적극 편성, 다양한 방법의 연수를 통한 맞춤형 연수 강화
  - 기본교육 전반에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속, 현장학습도 병행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 교육훈련기관 간 사이버교육을 연계하여 이러닝 콘텐츠 상호 활용

## 2-2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

### 2-2-① 지역사회 통일교육 기반 구축 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 □ 2021년 추진 실적

- 지역통일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통일교육위원의 활동 역량 제고, 민간의 통일교육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 코로나19 상황下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 다양화 및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풀뿌리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 견인
  - 통일교육위원의 역량 강화, 활동 영역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및 주요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확산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
- 사회통일교육 다변화 및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 【2022년 시행계획】

-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허브(Hub)로 지자체·교육청·학교·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협력적 통일교육 사업 추진
  - △운영체계 개편(센터 7개→10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적 통일교육 서비스 제공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온라인 교육 사업 제도화
- 지역 사회에서 통일교육위원 활동공간 확대 및 교육 역량 제고
  - △세대·연령·전문성 등 고려, 제23기 위원 위촉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순회 강좌 등 활동 공간 확대
- 민간 차원의 통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확대 및 사회단체와의 통일교육 협업 내실화



## 2-2-② 지역사회 통일교육 추진(지방자치단체)

### □ 2021년 추진 실적

#### ○ 학교·시민 대상 통일교육 사업 실시

- 전문가 강의, 문화공연, 통일퀴즈 등 통일공감대 확산 교육

\* 대표사례 : (전라남도) 전남평화통일포럼 (울산광역시) 울산시민 평화아카데미 (충청남도) 청소년 열린통일강좌 (경상북도) 경북통일화랑 아카데미

#### ○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통일교육 사업 지원

- 찾아가는 학교 교육, 강사 양성, 문화·예술 콘텐츠형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 민간단체 및 시민 대상 사업 지원, 공모사업 추진

\* 대표사례 : (경기도) DMZ 파주·연천 평화기행 (세종시) 평화통일 사진전 (제주도) 통일상상화 그리기 대회, 나만의 평화 사진 공모전 등 지원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 세대별·지역 특색을 반영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청년 전문가 양성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강의·문화 공연 추진

#### 【2022년 시행계획】

#### ○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 통일공감대 확산 교육 실시 및 지역 통일 전문가 양성

\* 대표사례 : (제주도) 남북 소통공감 아카데미 (경기도·제주도) 제주-경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대구광역시) 통일일꾼 양성 저변인력 확대 등 통일교육사업 지원

#### ○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대표사례 : (경기도) 대학생 평화통일 핵심리더 양성 (대전광역시) 지역 통일교육단체 지원 (세종시) 세종시민대학 정책아카데미 통일교육 실시 (전라남도) 전남평화포럼

## 2-3 2030세대 통일교육 확산

### 2-3-① 2030세대 통일공감대 확산 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 □ 2021년 추진 실적

- 2030세대를 대상으로 흥미·참여·소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 도모
  - 평화·통일 이슈에 대한 토론·합의 과정을 통해 2030 참가자들이 입장문을 도출하는 「제2기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 운영
  - 북한 여행을 주제로 2030세대와 소통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토크 콘서트」 개최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2030세대에 친숙한 사회 저명인사의 강연 및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 참여를 통해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유도
- 평화·통일 이슈에 대한 2030세대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매체 활용 △쌍방향 소통 △토론식 합의 유도 방식의 교육 추진

##### 【2022년 시행계획】

- 흥미·참여·소통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의 통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아카데미’ 등 쌍방향 소통·토론식 프로그램 확대·강화 △2030세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 ※ △유명 인플루언서와 연계 강화 △2030세대 주축 동호회 대상 통일문화 활동 지원 등

### 3

## 통일교육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 핵심 전달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학교·지역사회·공공부문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차세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통일교육의 전문성 강화

\* 법 규정 사항 :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제9조의2)

### 3-1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 3-1-① 교원 연수 강화 등 학생 통일인식 제고 지원 교육원(연수과)

##### □ 2021년 추진 실적

○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전달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 초등 교장(감)·교사, 중등교장(감)·교사, 통일교육 연구학교 교사, 예비교사 등 교사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621명 수료)

※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으로,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선도할 '핵심교원' 양성

○ 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활동 지원

-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원 대상 '교원 아카데미'(배움활동 6회, 탐구활동 3회, 나눔활동 2회), 교육전문직 대상 '정책리더 연수(175명)' 운영

- 시도교육청 여건·특성을 고려한 교원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사 연구회(116개) 구성·운영

※ (충북) 평화통일교육 네트워크 현장기행 워크숍, 평화통일교육 토크쇼, 더 큰 평화 지도를 그리는 대담회, 길 위에서 찾는 평화통일교육, 인문학의 눈으로 보는 평화통일 연수 등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통일교육 역량 제고

- 학생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교사들이 핵심 전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강화

- 시민교육 연계 학교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교원의 역량 제고
  - 시민적 가치(존중, 자율, 연대)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의 민주시민 및 평화·통일 역량 강화

### 【2022년 시행계획】

- 교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기존 연수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및 교수기법 등 강의
- 예비교사 대상 평화·통일교육 강화를 통해 차세대 교원 역량 제고
  - 평화·통일,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활동 지원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프로그램 운영
    - ※ 전문가 특강과 기 개발·보급한 자료에 대한 우수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계획에 따라 교원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 학교급별·생애주기별·직급별 특성을 고려한 연수 개설·운영
  - 통일교육의 실천사례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 3-1-②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교육원(연수과)

#### □ 2021년 추진 실적

- 범정부 차원의 통일 전문인력 양성
  - 통일정책지도자과정(국·과장급 66명, 45주), 통일미래기획과정(실무급 15명·14명씩 연 2회) 등 공무원 대상 장기 과정 운영
- 기관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상별 교육 진행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등 타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 연계 추진
- 남북교류협력담당 공무원,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 군장교, 경찰공무원 등 통일·안보 분야 담당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진행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 확대를 통해 범정부 통일정책 역량 강화
  -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 【2022년 시행계획】

- 공직자 통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속 운영
  -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획을 연계하는 역량 구축
  - 중견간부공무원, 중견실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남북교류협력, 비상대비 등 담당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대상 맞춤형 통일교육 추진

## 3-2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교육원(연수과)

### 3-2-① 전문가 양성 교육원(연수과)

#### □ 2021년 추진 실적

-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과정 운영
  - 2030 대학(원)생 및 졸업생, 업계 종사자 등 총 50명 대상(주 1회, 36주)
- 공공 및 사회 부문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통일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34명 및 통일교육 위원 등 사회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 20명 양성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2030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전문인력 양성
  - 통일·평화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2030세대의 이해 제고 및 남북 교류협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
- 전문강사의 저변 확대와 전문강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신규 전문강사 양성 및 재교육반 운영 추진

※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2,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0조(재교육)

##### 【2022년 시행계획】

-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운영(주 2회, 3학기(각 12주) 1년 과정)
  - 대학생, 일반인, 교류협력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대상
- 학교 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학교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20명, 4주)
- 통일교육 전문강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교육반 운영(100명, 3회)

### 3-2-② 사회지도층을 통한 파급력 제고 교육원(연수과)

#### □ 2021년 추진 실적

##### ○ 여론 주도층 대상 제11기 통일정책최고위과정(35명) 운영

- 법, 보건·의료, 경제·금융·산업, 정부,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CEO 및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 지도층 인사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평화·통일문제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강의 및 현장견학 병행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가안보실 1차장, 주한EU 대사, 과기정통부 1차관 등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사회 지도층이 통일공감대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 제고
  - 오피니언 리더가 각 분야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통일정책최고위과정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

##### 【2022년 시행계획】

-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으로 제12기 통일정책최고위 과정 구성·운영
  -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각계각층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확대, 종교·문화·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통일교육 수요 추가 발굴
  - △대북·통일정책 △통일외교 등 통일문제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실시
- 통일정책최고위과정 네트워크 지속 구축·활성화
  - 총동문회 등을 통해 기존 수료생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추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4 통일교육 국민인식 제고

- ◎ 통일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통일 공감대 형성  
\* 법 규정 사항 : 통일교육주간(제3조의3)

### 4-1 통일공감 문화행사

#### 4-1-① 통일교육주간 교육원(교육총괄과)

##### □ 2021년 추진 실적

- 「제9회 통일교육주간」을 통한 평화·통일 인식 확산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초·중·고 등), 지자체, 선도대학 및 협력대학, 민간단체 등 다양한 국민참여로 연인원 99만 명, 콘텐츠 조회수 511만 회 기록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전 연령대, 국내외, 학교 안팎, 단체·기관 등 다양한 국민 참여
  - 누구나 통일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참여·체험 프로그램 제공
    - ※ 대면·비대면 방식 탄력적 운영

##### 【2022년 시행계획】

- 다양한 세대·연령대의 국민 참여,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1050 캠페인] 10대(미래세대)와 50대(기성세대)가 함께하는 교육주간
    - ※ △개막행사(기념식, 학술회의) △학교통일교육(연구학교 특별수업, 통일문화경연대회, 낙도지역 청소년 통일 현장체험, 통일부 간부진 일일교사) △사회통일교육(제23기 통일교육위원 출범식, 지역통일교육센터 대면·비대면 교육,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 제3기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 △자료제공(학습강의안, 클립영상) △기타(유튜브 채널과 협업, 온라인 이벤트) 등



## 4-1-② 지역별 통일공감대 행사(지방자치단체)

### □ 2021년 추진 실적

- 평화통일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개최
  - 통일문화행사, 통일캠프,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강연회 및 체험·전시 학습 공간 마련
  - \* 대표사례 : (울산광역시) 모바일 통일 퀴즈대회 (전라남도) 어린이 DMZ 통일캠프 (대전광역시) 평화기원 희망음악회
- 민간 차원의 문화축제, 체육행사, 강연회, 문예제전 등 지원
  - \* 대표사례 : (전라남도) 청소년 평화통일 랩 경연대회 (강원도) 평화통일 공감 특투유 (경기도)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통일교육주간 계기 지역 공감대 행사 추진
  - 통일교육위원, 대학 등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활용, 통일공감대를 집중적으로 확산

#### 【2022년 시행계획】

- 지역사회 중심 '아래에서부터의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공감대 확산 사업 지속 개발, 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은 콘텐츠·형식 등을 발전시켜 지역사회 대표 사업으로 지속 추진
  - \* 대표사례 : (제주도) 평화공감대 도민 토론회 (경기도) DMZ 걷기, DMZ 자전거 DMZ 마라톤 (대전광역시) 평화통일문화제
  - 행사 기획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기획 사업 추진
  - \* 대표사례 : (경기도) Let's DMZ 평화예술제
- 통일교육주간, 8.15 광복절 등 특정 계기 적극 활용
  - \* 대표사례 : (대구광역시) 2022 대구 통일박람회

## 4-2 통일공감 온라인 홍보

### 4-2-①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감대 확산 교육원(스마트교육팀)

#### □ 2021년 추진 실적

-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확대 및 통일교육 전달체계 다양화

※ 인기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내 교육원 계정을 주로 활용, 카드뉴스·영상을 통해 온라인 통일교육 자료·교육원 일상 등 소개

- 뉴미디어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유튜브 ‘짤막’ 시리즈 △인스타그램 기반 웹툰 ‘인스타툰’ 제작 등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SNS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통일교육 관련 논의가 다방면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최신 트렌드,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 확대

##### 【2022년 시행계획】

- 다양한 매체·채널을 활용하여 소통을 통한 통일공감 확산

- 남북한의 다양한 일상 소재를 활용,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

- △인스타툰 △카카오톡 이모티콘 △숏폼(Short Form) 콘텐츠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지속

## 5

## 통일교육 인프라 마련

- ◎ 사회변화 트렌드 반영 도서자료, 영상자료,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누구나 쉽게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닝(E-Learning) 서비스 제공, 학술지 발간, 학술행사, 연구활동 지원

### 5-1 통일교재 개발

#### 5-1-① 도서자료 교육원(연구개발과)

##### □ 2021년 추진 실적

-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한반도 평화 이해』(신규) 등 기본교재 발간
-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도서콘텐츠 다종화(20종)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정책고객들의 수요 반영하여 기본교재 콘텐츠 업그레이드 지속
  - 『한반도 평화 이해』 콘텐츠(△동양평화 사상 △사회통합 등) 보완 등
- 사회변화 트렌드 반영 도서기획, 인문대중서 지속 발간 및 차별화
  - 생명·취업·여가·문화·공정 등 일상의 평화와 접목된 소재 개발

##### 【2022년 시행계획】

- 기본교재(3종) 콘텐츠 보완 및 디자인 고급화 등 브랜드 가속화
- 일상적 삶에 기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리즈·교양도서 지속 개발
  - △인문학 시리즈 도서 『손안의 통일』(5종) △『북한 포스터 화보집』 △AR 활용 교재(도덕 4차시) △청소년통일사전 △『명사특강』 등 9종
- 사회적 배려 대상 등 정책고객 다변화(유아·장애인·재외동포 등) 및 콘텐츠 개발

## 5-1-② 영상자료 교육원(연구개발과)

### □ 2021년 추진 실적

- TV 프로그램 및 유튜브 채널과 협업 확대, 통일 공감대 형성
  - (TV)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KBS1)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JTBC)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every1) △브레드이발소3(KBS1·투니버스, 22.1월) 등
  - (유튜브) △평화를 지켜쭉(1020) △SBS 모비딕, 연애블랙리스트(2030) △사피엔스 스튜디오(2040) △장성규니버스(2030) △교양만두(1030) △354삼오사(2040) 등
- 대상·형식·활용처별 수요자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영상자료 개발
  - △학교용 교과 연계 클립영상(신규 4, 타기관 영상 발굴 46편, 교수학습자료 18편) △애니메이션(4종) △공공교육용(2종)·재외동포용(5종)·시각장애인용(5종) 영상 등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청소년, MZ 세대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영상 콘텐츠 개발 확대
  -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일상·대중적 요소 활용, 평화통일 메시지 전달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매체·기술을 도입하여 교육 효과 지속 제고
  - 유튜브, 메타버스, AR·VR 등 미디어 환경변화와 다양한 집단·연령층의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의 교육 추진

#### 【2022년 시행계획】

- TV 및 유튜브 채널과의 협업을 통한 고품질 영상콘텐츠 지속 개발
  -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 다변화
- 젊은 세대에 접근이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젊은층 직접 제작(미디어·영상 전공 대학생) △MZ세대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청소년을 위한 웹드라마 및 짧고 감각적인 영상 등

## 5-1-③ 강의안 등 기타자료 교육원(연구개발과)

### □ 2021년 추진 실적

-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시행을 위해 표준 강의안 개발·제공
  -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한반도 평화 이해』
- 통일교육주간 계기 일일 통일교사의 통일교육 강의안 제공
  - 초등용, 중고등용, 대학·일반용 등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자료 보급을 위한 가이드북 제공
  - 교과 연계 통일교육 클립영상을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가이드북」 제작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일상형 통일교육 강의 콘텐츠 개발
  - 교육 현장의 요구 등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 마련
- 새로운 교육 대상 발굴 및 수요자 맞춤형 강의안 개발·보급 확대
  - 기존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고 통일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강의 자료 개발

#### 【2022년 시행계획】

- 평화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새로운 강의안 개발
  - 교육 현장의 변화된 수요에 맞춰 내실 있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 학술지, 학술회의 등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 전문가·교원·시민단체 등의 통일교육 연구지원 및 관련 논의를 집대성하는 공론의 장 마련

## 5-1-④ 교수·학습 콘텐츠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 □ 2021년 추진 실적

- 평화 역량을 키우는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3종), 기 개발·보급된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도움자료(3종) 개발·보급
    - ※ 분단의 일상성 관련 이론편 및 교수 학습자료 3종, ‘활용 안내서, 리플릿, 동영상’ 각 1종
  - 교육청별 특성 및 여건에 따른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 (교육청) [광주 학생 온라인 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우리의소원.com), 초등학교 프로젝트형 통일교육 학급 교육과정 자료, [전남 남도 민주평화길 체험학습 자료, [제주 훈디가게 4380 동영상, 제주 4·3 유적지 체험학습 영상자료, 중등 평화인권교육 학습자료
- ‘통통평화학교(tongil.moe.go.kr)’ 개편으로 플랫폼 기반 구축
  - 학교급별·구성원별·활용목적별로 분류하여 탑재 자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교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 관리위원회를 통해 탑재 자료 질 관리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시민적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통일교육주간 등에서 활용 가능한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누리집(통통평화학교)을 활용한 현장 보급

#### 【2022년 시행계획】

-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교육자료(카드뉴스 등) 개발·보급
- 학교 통일교육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교원연수 및 연구 자료, 우수 사례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통통평화학교) 운영

## 5-2 원격교육 개발

### 5-2-① 사이버강의를 통한 학습 교육원(스마트교육팀)

#### □ 2021년 추진 실적

- △공공 △교원 △2030 △시민 △방북 △경남교육청 등 6개 과정 운영
-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비대면 교육 수요에 선제 대응, 사이버 교육 이수자 2년 연속 40만 명 달성(3년 전 대비 4배, 2년 전 대비 2배 증가)
  - '21년 이수인원은 총 446,577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내실있는 운영 도모
  - △새로운 주제 발굴 △참여형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교육생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확대
  - 콘텐츠 개발·교육 운영 등과 관련, 교육생 의견을 직접 수렴·반영
-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한 통일교육 확대 추진

##### 【2022년 시행계획】

- 최신 트렌드 및 교육 수요 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 ※ △사회통합·인문학·평화 등 최근 주목을 받는 분야 △설문조사 결과 등 반영
- SNS 이벤트, 설문 조사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의견수렴 확대
  - ※ 「스마트러닝 서포터즈」, 「내가 만드는 평화통일 콘텐츠」, 「학습후기 이벤트」 등
-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콘텐츠 품질 제고
  - ※ △추천강좌 및 맞춤형 로드맵 △시의성이 낮은 콘텐츠 등 업데이트

## 5-3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

### 5-3-①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교육원(미래세대교육과)

#### □ 2021년 추진 실적

- 초·중·고 734개교 대상 '21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21.11~12월)
  - △초·중·고 학생 67,000명, 초등 담임 및 사회·도덕·역사 교과 교사 4,437명 참여 △학생들의 평화·통일 인식 및 학교 통일교육 실태 파악

#### < 2021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 초·중·고 학생

- 북한 인식 : 협력(52.6%) > 경계(27.1%) > 지원(8.0%) > 적대(7.7%)
- 평화 인식 : 평화롭지 않다(30.2%) > 평화롭다(21.1%)
- 통일 필요성 : 필요(61.1%) > 불필요(25.0%)
- 통일이 필요한 이유 : 전쟁위협 해소(27.2%) > 같은 민족(25.5%) > 이산가족 아픔 해결(20.9%)
- 통일 장애요인 :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31.9%) > 북한의 군사적 위협(8.5%) >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차이(14.9%) > 통일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10.3%)

##### □ 교사

- 교과수업 중 통일교육 경험 ; 예(90.0%) > 아니오(10.0%)
- 수업내용 : 남북 간 평화의 중요성(68.9%) > 남북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60.2%) > 통일이 가져 올 이익(56.8%) >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의 공통성 >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50.2%)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부분 : 사회적 공감대 조성(86.4%) > 교수학습 자료 개발(82.6%) > 교사 전문성 향상(75.2%) > 관련 법·제도 정비(73.6%) >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71.7%)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지속 실시
- 실태조사 분석·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 발전 뒷받침

##### 【2022년 시행계획】

- 2021년 실태조사 종합평가 실시 및 학교통일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유관 기관·부서 실무 협력 추진(상반기)
- 2022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하반기)



## 5-3-② 평화·통일교육 학술 연구 지원 교육원(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

### □ 2021년 추진 실적

- '사회통합형 평화·통일교육 방안을 탐색하다' 심포지엄 개최
  - 전문가, 교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쟁점, 구체적 교육 방법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 진행
-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추진
  -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체계·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평화통일교육 발전방안』, 『통일담론 쟁점 및 통일교육 발전방향』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평화·통일 전반에 대한 학술·정책 연구 추진, 통일교육 방향성 정립
- 국내외 학술 교류 및 성과 공유 확대, 대국민 통일공감대 확산 기반 구축

#### 【2022년 시행계획】

- 평화·통일교육 쟁점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수립 관련 과제 수행
  - \* △(통일담론) 시대정신 분석을 통한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 모색 △(사회통합)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 연구 △(통일교육) 주한 외국인 대상 평화통일 교육 방향과 내용
- 원내 교수진-전문가 공동연구 의제 발굴 및 추진
  - △국제관계 △북한 이해 △통일 인식 등
- 국내외 연구소·유관기관 등 협업, △포럼 △연합 심포지엄 등 교류 및 연구 성과 공유
- 「평화와 통일」 창간호(5월)를 시작으로, 연2회(상·하반기) 저널 발간

## 6

##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 ◎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추진

### 6-1 에듀테크형 콘텐츠 개발 교육원(연구개발과)

#### □ 2021년 추진 실적

- 기존 도서·영상 중심의 전통적 콘텐츠에서 AR·VR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확대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AR·VR콘텐츠 제작(통일교육AR 초성퀴즈, 통일교육VR DMZ자연, VR통일가상 여행 등)

※ 코로나 상황 속, AR·VR 콘텐츠 등 활용 청소년 통일교육 추진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AR·VR, AI 등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확대
  - ‘사람과 사람’(face to face)의 만남 중심으로 이뤄졌던 통일교육에서 ‘기술’(Hardware)과 ‘교육’(Software)이 융합된 통일교육으로 전환
- ‘교육+기술’의 접목을 통해 학습자가 선호하는 통일공감·체감형 자기주도학습 구현, ‘디지털 스페이스’ 활동 등 액티브러닝 통해 통일관심 제고
  - AR/VR 교재 제작, 영상제작·상영, 디지털 스페이스(포토 존, 체험부스)에서 ‘통일상상’ 활동 등 온라인 다수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2022년 시행계획】

- AR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모바일 앱’ 개발 추진
  - 중등 도덕 교과서의 ‘통일단원’에 AR기술 접목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 스마트폰 활용 그룹별 토론활동 등 참여형 교육 통해 학습효과 제고

## 6-2 디지털 플랫폼 활용 확대 교육원(스마트교육팀, 교육총괄과)

### □ 2021년 추진 실적

- 디지털 기반 비대면 교육 확대로 사이버교육 활성화
  - 이수인원 44.6만명 기록, 역대 최다 기록 달성(20년 44.2만명 대비 4천명 증가)
- 빅데이터 활용 교육상담 프로그램(챗봇 서비스) 등 도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쌍방향 소통 확대
  - '21.9월 이러닝 챗봇 서비스 오픈, 1,645건 상담(서포트봇 1,477, 채팅상담 68)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추진
  - △빅데이터 기반 구축 △조직·인사·예산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통일교육 정보 및 현장 프로그램 등 디지털 가속화
-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사이버 통일교육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빅데이터, 자연어처리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365일 24시간 AI 상담 서비스 제공, △SNS 뉴미디어 활용 디지털 교육 플랫폼 확대 등

#### 【2022년 시행계획】

- 웹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전략 계획(ISP) 진행
- AI 챗봇,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 확대
  - 디지털 챗봇을 통한 교육 상담 분야(1개→4개) 확대 및 분야별·세대별 상담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AI 상담 활성화
  -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 교육 콘텐츠 탑재·활용 확대
  - \* △(유튜브) 동영상 및 교육자료 탑재 △(페이스북 등 SNS)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 쌍방향·실시간 공유 △(메타버스) 실감형·체험형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 탑재

## □ 2021년 추진 실적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도입
  - 메타버스 콘텐츠 'DMZ 너머 백두산까지' 제작, 재미와 소통을 통한 평화·통일 감수성 확산 도모(경인통일교육센터)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연구용역 실시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통일을 주제로 한 웹 기반 실감형·체험형 메타버스 콘텐츠 지속 개발
  -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 롤모델 제시, 통일교육을 선도
- '23년도부터 확장 가능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추진

## 【2022년 시행계획】

- 메타버스 공간에 통일 이후 한반도를 구현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실감형 체험 교육 추진
  - 기존 교육용 콘텐츠의 정형성(통일 당위성·설명식 등)에서 탈피,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가상 경험을 통해 통일교육 효과성 제고
    - \* 통일 한반도에서의 △이동의 편의성 체험 △다양한 경제활동 △새로운 직업 체험 등의 콘텐츠 구성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콘텐츠 이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
- '22년에는 웹기반 실감형·체험형 메타버스 시범콘텐츠 개발
  - 전문 개발업체와 협업하여 민간 플랫폼에 탑재, 콘텐츠 접근성 제고

## 7

## 통일교육 체험공간 운영 내실화

- ◎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13개 지역 통일관을 복합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착근

### 7-1 통일관

#### 7-1-① 오두산 통일전망대 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 □ 2021년 추진 실적

- 수도권을 대표하는 통일 전시·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대국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연중 기획전시(온·오프라인) 개최 △상·하반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내외 방송·행사 공간 활용 등 평화·통일 콘텐츠를 제공
- ※ 전년 대비 관람객 75% 증가('20년 63,417명, '21년 110,524명 방문)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평화·통일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
  - △지자체·교육청 연계 사업 추진 △평화·통일 문화행사 개최 △체험 프로그램 확대 △SNS·홈페이지 홍보 등 전망대 활성화 추진

##### 【2022년 시행계획】

-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연계 사업 강화
  - 관람 대상·단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시환경 개선 및 다양한 평화·통일 문화 콘텐츠 제공
  - △AR(증강현실) 망원경 시스템 설치 △문화행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7-1-② 지역 통일관 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 □ 2021년 추진 실적

- (전시 환경 개선 및 지원) 통일관 리모델링, 통일관 수요를 반영한 전시 콘텐츠 지원 등 전시환경 개선 추진
  - 광주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전시·교육 자료가 균형을 이룬 전시 공간으로 개선
  - 지역 통일관 실무 회의 의견을 반영, △디지털 패널 설치 △실감형 콘텐츠(미디어 월) 보급 △포토존 설치 등 전시 콘텐츠 확충
-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지역 통일관별 상·하반기 체험프로그램 2회 운영, 지역 상황에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미래지향·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전시 체험물 확충 및 지역 특색을 살린 통일문화·체험 공간으로 육성
  - 전국 통일관 전시·체험물 현황 점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관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실감형 전시 콘텐츠 개발 등

#### 【2022년 시행계획】

- 지역 통일관 전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 평화·통일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
- 전국 통일관 상·하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5월, 10월)
- 전시 콘텐츠 지원 상시 추진
  - △통일관 전시패널 현행화 △전시체험 콘텐츠 개발 용역 등 추진

## 7-2 통일 체험연수 시설

### 7-2-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 2021년 추진 실적

- 비대면 환경 구축 및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 실시
  - Zoom 채널 활용 10회 연인원 699명 연수 참여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찾아가는 연수' 추진
  - 경상·전라·충청·강원권 학교·청소년수련기관 38회 연인원 1,263명 참여
-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선 및 '체험키트' 제작·활용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안정적인 통일체험연수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적용 가능한 '비대면 연수' 활성화 및 '찾아가는 연수'를 통한 체험연수의 효율성 제고
- 체험연수 프로그램 보완 및 일관성 있는 통일체험연수 운영

##### 【2022년 시행계획】

- 통일 미래세대 통일체험연수 운영
  - 전국 초·중·고 대상 '비대면 연수' 개시(3월) 및 청소년수련기관 대상 '찾아가는 연수'(1월~) 추진
  - 다만,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 초·중·고 대상 입소형 연수 및 2030세대 등 대상 특화연수 병행(하반기)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선 지속
  - △비대면 체험연수 세부 프로그램 개선·보완 △교구재 사용설명 클립영상 제작 △체험연수 가이드북 제작·보급 등

## 8

## 글로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해외 신진학자, 외국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실시, 해외 전문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일교육의 외연 확대

### 8-1 통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8-1-① 해외 전문가 초청 교육원(교육총괄과)

##### □ 2021년 추진 실적

- 한반도 문제 전공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학·연구기관 방문 순회 특강 및 전문가 포럼 등 실시
  - 미국, 영국, 스웨덴 전문가 4회 초빙, 전문가 대담 및 특강 총 29회에 약 580명 참석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20년 대비 참석자 약 2배 증가, 초빙 인원 2배 증가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해외초빙교수 프로그램 다양화
  - 온라인 강의, 토크 콘서트, 현장 학습 등 쌍방향적 프로그램 확대
- 과거 해외초빙교수 네트워크 지속 관리, 통일교육에 활용

##### 【2022년 시행계획】

- 해외전문가 초빙교수 사업 총 4회 운영
  - 인력풀 확대, 인적 교류로 지속적 협력 모색
  - 코로나 상황 고려, 온라인 교육 병행 운영으로 참석자 확대



## 8-2 글로벌 통일교육 추진

### 8-2-① 해외 신진학자 대상 통일교육 교육원(교육총괄과)

#### □ 2021년 추진 실적

- 「2021 해외 신진학자 평화통일 아카데미」 온라인 개최(6.14~6.16)
  - 미주·유럽·아시아 지역 등 27개국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신진학자 및 공무원 58명 참석,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진행
    - ※ △전문가 특강 △연구 성과 발표회 △국제 학술회의 등
- 「미주지역 해외신진학자 동문회」 개최 (127)
  - “2022년 한반도 정세전망” 관련 토론 및 최근 연구 활동 공유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기존 통일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자 대상 네트워크 관리
- 참가자의 국적 및 전공 다양화를 지속 추진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충

##### 【2022년 시행계획】

- 해외신진학자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상반기 개최
  - 10주년 기념 행사로 진행, 역대 최대의 해외신진학자 참석
  - 통일교육주간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해외 한국학 연구소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 추진 및 관리를 통해 체계적 운영

## 8-2-②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통일교육 교육원(교육총괄과)

### □ 2021년 추진 실적

- 재외동포, 주한외국인, 해외유학생 등 대상 글로벌 통일교육 실시
  - 국립국제교육원, 한스자이델재단 등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상과 비전 공유를 위한 글로벌 과정 운영
  - △해외동포반(9.29~10.29, 108명) △주한외국인반((△1차(5.20, 52명) △2차(7.6~7.7, 68명)), △외국유학생반 (11.1, 26명) 총 4회 운영

###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지식 습득을 넘어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통일교육 과정 확대·개선
  - 해외 입양 동포사회 및 국내 외국인학교 등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도 조명,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영문 홈페이지 개편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 【2022년 시행계획】

-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
  -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인사 대상 통일교육 특강 진행
- 글로벌 통일교육을 위한 해외용 콘텐츠 개발·보급
  - 재외동포 어린이 대상 도서, 영상 및 외국어 자막 제작·보급, 해외 한인학교, 해외통일교육위원 등을 통해 교민사회에 보급

## V. 협조·요청사항

###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 ① 대상 기관

- 법은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법 제6조의7)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 통일교육 의무 대상 기관 >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 : 18부 5처 17청
  -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 2원 4실 6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② 교육 방법

- 통일교육 계획 및 수강 방법
  - 의무 이수시간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이며, 교육 방식은 △집합 교육(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기타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 중 선택하여 수강
  - 본부·본청 등 최상위기관은 대면 강의 1회 이상 포함 권장

#### < 통일교육 계획 및 수강 방법 >

- 집합 교육 : 추천 강사, 외부 초청강사, 소속 직원 등 대상 기관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실시
- 시청각교육 : 교육 대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교육 관련 영상자료 시청
- 사이버강의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교육센터-이러닝 신청' 또는 공공 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www.uniedu.go.kr/unipedu/) '이러닝 공공과정 신청'을 통해 강의 수강 △나라배움터 등을 통한 통일교육 주제에 맞는 강의 수강
- 기타 : △세미나 △학술회의 △워크숍 △독서 토론 △학습동아리 △현장견학(DMZ, 통일 전망대, 지역통일관 등 통일·북한 관련 장소·시설물 등)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 참여 △지역통일교육기관(지역통일교육센터 등) 활용 등 가능

\* 교육자료 등의 단순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은 불인정

**< (예시) 통일교육의 내용 >**

과목	내용 요소
통일 문제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 남북관계의 전개 ·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 통일의 비전과 과제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통일 미래상 · 분단과 평화 · 평화경제 · 분야별 남북교류 및 인도적 협력 · 통일인문학 등
북한 이해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 변화 전망 등 ·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외교·군사·경제·교육·문화·예술, 주민생활 등)

\*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통일 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참고, 동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에서 내려받기 가능

- 통일부(통일교육원)는 통일교육 강사 정보 및 콘텐츠 지원
  - △추천 강사 리스트 △표준 강의안 △이러닝 교육과정(콘텐츠 포함) △영상자료 △도서자료 등
  - 실적 집계 편의를 위해 매월 이러닝 교육의 수강결과를 수강자 소속의 최상위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대상 기관(소속 직원)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준수 및 유의사항 숙지
  -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지향 △개인적·당파적 이용 금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법 제3조)
  - 교육 내용이 통일과 무관하거나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적 불인정 가능

**③ 교육 실적 제출**

- 대상 기관들은 매년 2.28까지 전년도 통일교육 실적 제출
  - 교육 대상 직원의 90% 이상 참여를 권장하며, 제출된 실적을 집계하여 국무회의 보고 예정
  - \* 제출된 실적에 대한 점검·보완 요구·현장점검(필요시) 실시 가능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직자안보교육'과는 별개로, '통일안보교육' 등의 명칭으로 안보교육과 함께 실시하고 실적 제출시 불인정

## 2

## 통일교육주간 참여

### ① 통일교육주간 개요

- 국민의 통일 의지 결집을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규정(법 제3조의3)
  - △기념행사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 '22년 제10회 통일교육주간은 5.23. ~ 5.29.로 동 법정 주간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별 행사 개최 필요

### ② 통일교육주간 참여 요청

- (교육청) △통일교육주간 통일교육 수업 진행 △교육감 일일 통일교사 참여
  - 지원 사항 : 학년별 강의안, 학급 단위 참여 온라인 이벤트 등
- (지자체) 자체 평화·통일교육·문화 프로그램 추진 및 통일관, 지역 통일교육센터, 시민단체 등의 통일교육주간 행사 지원
- (부문별 기관)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추진
  - 학술세미나,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홍보 부스 운영, 공모전,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 3

##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강화

### 1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시책 수립·시행(법 4조)
  - 지역사회 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및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지역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 △지역통일교육계획 수립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통일교육의 위탁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
  - \* 조례 제정 지자체(13)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 조례 제정 교육청(16) :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교원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등(법 7조·시행령 6조)

#### < 통일교육 권장 시수 >

- 2주 이상 3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 4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교육훈련과정 : 8시간 이상

- 교육훈련기관이 강사를 섭외하여 자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국립통일교육원 사이버강의 이수율 각 기관 교육 실적으로 집계 가능
- 국립통일교육원과 교육훈련기관 연계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 학습 등을 포함한 별도 과정 진행도 협의 가능

## VI. 부록

### 1 2021년 통일교육 통계

#### □ 국립통일교육원 교육과정별 통계(원내 교육 + 원외 교육)

(단위 : 회/명)

교육과정		횟수	인원	교육과정		횟수	인원
<b>총계</b>		<b>4,673</b>	<b>1,009,203</b>	통일단체반		5	118
<b>원내교육</b>		<b>135</b>	<b>5,153</b>	종교단체반		1	32
전문과정		10	320	하나센터반		1	47
통일정책최고위과정		1	35	국제		5	312
통일정책지도자과정		1	66	주한·해외 신진학자반		1	58
통일미래기획과정		2	30	외국대학생반		1	26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5	139	주한유학생반		2	120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		1	50	재외동포반		1	108
공직자과정		51	2,928	특별과정(일반시민 유관기관 등)		13	440
통일부공무원반		3	80	기타과정(수료자 워크숍)		3	111
중견간부공무원반		2	41	<b>원외교육</b>		<b>4,516</b>	<b>557,473</b>
중견실무공무원반		2	63	학교통일		2,139	195,031
비상대비 업무담당 공무원반		2	63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1,276	169,793
남북교류협력담당 공무원반		1	33	통일·북한 특강		95	6,775
퇴직예정공무원반		2	63	통일·북한 강좌		482	3,013
지자체공무원반		12	365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286	15,450
경찰공무원반		4	112	사회통일		2,129	346,109
군인공무원반		5	130	통일관 체험프로그램		15	110,398
공무원교육기관 연계과정		16	1,936	지역통일교육센터		1,840	215,063
공공기관반		2	42	통일교육협의회		181	16,568
<b>교원과정</b>		<b>39</b>	<b>621</b>	사회단체		7	187
초등교장(감)		7	121	통일교육위원반		41	1,007
초등교사(단기)		7	94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45	2,886
초등교사(기본)		1	13	해외전문가 초빙교수		4	830
초등교사(심화)		1	11	원내교수출강		244	15,503
중등교장(감)		6	98	<b>사이버교육</b>		<b>22</b>	<b>446,577</b>
중등교사(단기)		8	64	공공과정		11	401,678
중등교사(기본)		1	23	교원과정		11	9,607
중등교사(심화)		1	16	2030과정		상시	18,712
교사특별반(보건교사)		2	21	시민과정		상시	13,198
예비교사(대학생)		5	160	방북교육과정		상시	373
사회단체		14	421	경남교육청과정		상시	3,009
통일교육위원반		7	224				

## 2

## 2022년 통일교육 예산

## □ 국립통일교육원 주요사업비 예산

구분	사업명	예산(백만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339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 (통일정책지도자, 통일미래기획)	778
	통일미래 맞춤형 교육 운영(최고위, 전문강사)	189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추진	151
	평화해설사 양성(신규)	15
	통일교육자료 개발 보급	2,491
	통일교육자료센터 운영	56
	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프로그램	71
	평화·통일교육 연구센터(신규)	230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신규)	198
	계	4,518
학교통일교육 강화	초중고 학교통일교육 지원	1,146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415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331
	계	4,892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구축	2,197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2,507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182
	계	4,88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509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청사 관리 운영	1,343
	시설 개보수(시설비 등)	1,222
	계	2,565
총계		17,370

\* 인건비, 기본경비 제외



## ① 법

## 통일교육 지원법

(2021.12.22. 일부개정, 2022.6.22.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삭제 <2008. 12. 31.>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97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교육기본법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2 시행령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2018.9.11. 일부개정, 2018.9.14.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 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장비를 보유할 것
  2. 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장비 개요서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 ③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④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5. 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 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등 통일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일교육부터 적용한다.

### 3] 조례

구분	기관명	조례명	제개정일
지자체 (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2017. 1.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9.2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2015.12.1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20. 9.24.
	경기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11.12.
	강원도	강원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2016.12.30.
	충청남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2.31.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9.30.
	전라남도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11. 2.
	경상북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13.
교육청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5.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9.30.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 4.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9.23.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12.29.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21. 7. 1.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12.2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4.29.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3. 8.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2018.11. 9.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 6. 8.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7. 3. 1.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 3.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2. 8.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16.